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최현우】

### 가. 제안이유

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,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  
(안 제7조제1항)
- 재활용품 수집·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  
(안 제7조제1항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전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,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 
안 제7조제1항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, 재활용품 수집·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에 관한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  
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및 재활용품 수집·운반 능력을 향상을 위한 지원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지원 대상인 지역 내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,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안전수칙 및 교통사고 예방법 등 교육을 통한 인지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